



「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」 공고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7. 14.

아 산 시 장

1. 지원대상 및 규모

- 가. 사업명: 2025년 수출 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
- 나. 지원규모: ₩20,000,000(금이천만원)
- 다. 사업추진 기본방향 : 아산시 농산물 전략 품목으로 생산자단체(업체)와 시가 공조한 수출 촉진 전략 마련 및 실질적인 해외 판촉 활동 촉진
- 라. 사업계획
 - 총사업비: 40,000천원(시비 20,000천원 자부담 20,000)
 - 사업기간: 2025년 8월 ~ 12월
 - 사업대상: 전년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고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농산물 생산자단체(업체)
 - 사업내용: 해외 판촉행사 매장 통관비,임차비,인건비,시식비 등 지원

2. 지원절차

-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⇒ 신청 및 접수 ⇒ 사업 소관부서 검토 ⇒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⇒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⇒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 ⇒ 사업추진 ⇒ 추진상황 점검 ⇒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⇒ 지방보조금 지원

3. 지원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5. 7. 29.(화)까지 18:00 도착분
- 접수방법: 우편 및 방문 접수
- 접수처: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
- 제출서류: 지원신청서 1부(붙임2)

※ 서식은 아산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asan.go.kr/>) 고시.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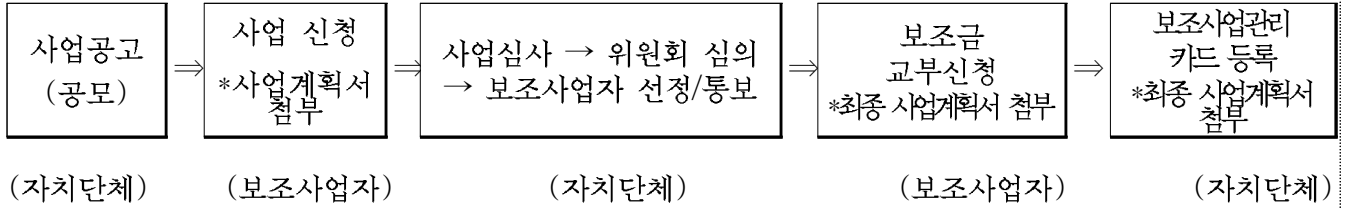
4. 심의 기준 및 결과 통보

- 심의기관: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- 심의기준: 수출실적·계획,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·타당성·적법성 등 종합 고려
- 결과통보: 사업 선정 후 사업 부서(농식품유통과) 개별 통보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사항이 빠진 경우,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지방보조금법령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,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(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)에 따르며,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 부서에서 결정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수행배제, 고발 조치함.
- 상세한 내용은 농식품유통과(☎ 537-374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유 의 사 항 >

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기자본 부담액, 보조 사업기간,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 기초, 소요경비 사용 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아산시장이 정하는 사항)
-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: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(자부담 포함)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카드 제출

2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

-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
-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아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보조사업자는 아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3.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아산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

4.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고,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유통과(☎537-3748)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
지방보조사업 계획서



1. 신청사업명 : (신규, 계속사업)

2. 사업지원 필요성

-
-

3. 품목 및 수출현황

품목	나라	수출현황(중량/양)

4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 년 월 일 ~ 월 일
- 사업지역:
- 사업대상(인원):
- 사업량

—

5. 세부추진계획

①사업자			②수출업체				
업체명 (대표자)	주 소	연락처	업체명 (대표자)	주 소	연락처	주력품목	바이어 (회사명)

③관측내용					④사업비(천원)			
국가	행사명	장소	기간	관측 품목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

6. 기대효과

1) 사회적 기여도

-
-

2)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

-
-

6.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

<세입예산>

(단위 : 천원)

비 목		금 액	세 입 내 용
합 계			
자 체 수 입	소 계		
			○
보조금 수 입	소 계		
	도비보조금		○
	시군비보조금		○

<세출예산>

(단위 : 천원)

세부 사업명	예산 항목	세부 항목	금액	산 출 기 초
합계				
	보조금 소계			
	자부담 소계			

※ 사업예산과 경상예산 구분,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구분 작성/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합계가 일치토록 작성

※ 산출기초는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및 적용

7.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

○

※ 사업성격에 맞게 임의 변경 가능

단 체 소 개 서

단 체 명	
설립목적	•
지원근거 및 내용	•
단체연혁	• • •
인력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표자: (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) • 회원 수: 명 • 사무국 직원수: 명 (사무국장 명, 부장 명, 과장 명, 사무직원 명 등 기재)
기 구 표	<pre> graph TD A[] --- B[] B --- C[] C --- D[] C --- E[] D --- F[] D --- G[] D --- H[] D --- I[] </pre>
예산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해연도(2025)예산총액 : 천원(보조금 , 자체수입) • 최근 5년간 지원실적(아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) - 2010년도 : 천원, 2011년도 : 천원 2022년도 : 천원, 2023년도 : 천원, 2024년도 : 천원 ※ 5년 평균 지원액 : 천원
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	• •
2023년도 주 요 사업계획	• •

※ 붙임서류 : 1. 단체 정관 또는 회칙
 2.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(사본), 법인설립허가증(사본), 고유번호증(사본)
 *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,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

